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성평등가족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8. 23. 장철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8. 2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 국회(정기회)

-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4. 11. 1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 제429회 국회(정기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25. 9. 22.)

-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 9. 24.)

-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장철민)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

치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임.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들은 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움. 따라서 이들에게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과 같이 시설 퇴소에 따른 자립지원금, 자립수당 지급 등의 자립지원이 필요함.

또한, 형제자매가 성폭력 행위자인 경우 부모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성폭력 피해자를 강제로 가정으로 복귀시키려 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아동복지법」과 달리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이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지원에 관한 규정과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옥순)

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상담, 치료 등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근거 신설

개정안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은 그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현행	정춘생의원안	장철민의원안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생략) <u><신설></u>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하여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각 급학교의 장은 그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2. 심리 상담 3. 그 밖에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 ⑤ (현행 제2 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③·④ (생략)	③ ----- -제1항 및 제2항--- ----- ----- ----- ④·⑤ (현행 제3항	

현행	정춘생의원안	장철민의원안
	및 제4항과 같음)	

현행법¹⁾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취학에 걸린 기간을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학에 걸린 기간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피해 학생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이 이러한 조치에 필요한 결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에 승낙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2.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③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²⁾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학교 출석에 대한 부담 없이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상담,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한다는 입장임.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치료의 경우 지금도 진단서로 병가 처리하고 있고, 트라우마 피해자에게 치료 상담뿐만 아니라 정상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정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에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illegible]

현행	정춘생의원안	장철민의원안
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u><신설></u>	----- -----. 1. ~ 3. (현행과 같음) 4. <u>퇴소 시 자립지원금. 다만, 제17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만 한다.</u>	----- -----. 1. ~ 3. (현행과 같음) 4. <u>퇴소 시 자립지원금. 다만, 제17조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u>
4. (생략) ②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4조³⁾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으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는 법률에 명시하고, 제4호에서 그 밖에 보호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5조⁴⁾는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현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보호시설 입소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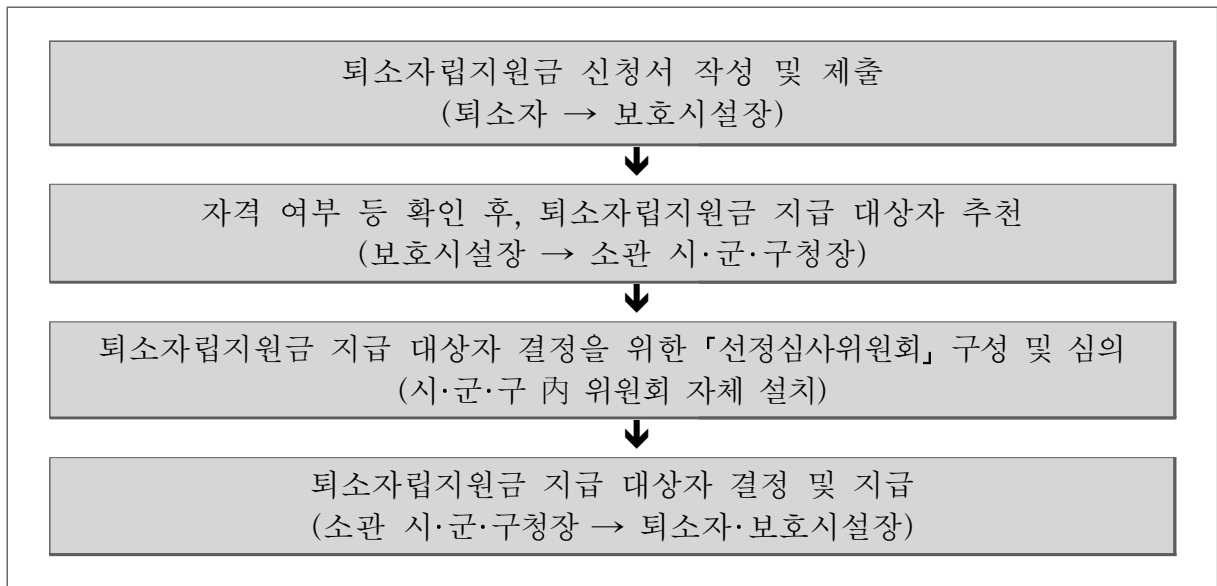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말한다.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19세 이상 도달한 자가 퇴소할 경우에 한하여 퇴소시점 전후 2개월 내에 1회에 한하여 자립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음.

< 퇴소자립지원금 지원 절차 >



자료: 성평등가족부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지급하는 퇴소자립지원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신규로 퇴소자립수당(50만원, 5년간 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있음.

【 2024 ~ 2025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사업비 산출내역 】

2024년 예산 (802백만원)	2025년도 예산안 (1,029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사업 : <u>802백만원</u> ◦ 생계비 138백만원 = 3.4백만원×40명 ◦ 퇴소자립지원금 103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사업 : <u>1,029백만원</u> ◦ 생계비 138백만원 = 3.4백만원×40명 ◦ 퇴소자립지원금 206백만원

$= \underline{5\text{백만원}} \times 30\text{명} \times \text{보조율 } 50\sim 70\%$ ◦ 생활지원비 등 561백만원	$= \underline{10\text{백만원}} \times 30\text{명} \times \text{보조율 } 50\sim 70\%$ ◦ <u>퇴소자립수당 124백만원(신규)</u> $= 50\text{만원} \times 12\text{개월} \times 30\text{명} \times \text{보조율 } 50\sim 70\%$ ◦ 생활지원비 등 561백만원
--	--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를 재구성

개정안은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25년도 예산안에 자립수당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는바, 자립수당 지원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만, 법률에 지원 근거를 명시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자를 미성년 피해자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을 정춘생의원안은 보호목적을 달성하거나(제17조⁵⁾제2항제1호), 제16조에 따른 입소기간 종료되어(제17조제2항제2호) 퇴소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장철민의원안은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거나(제17조제2항제3호)와 그 밖에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
-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보호시설의 퇴소)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4. 그 밖에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행위를 하여(제17조제2항제4호) 퇴소한 경우만을 제외하고 있어 지원 대상에 제17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의사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는바, 지원 대상의 범위에 차이가 있음.

현재 퇴소자립지원금은 미성년 피해자가 19세 이상이 되어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에 지원하고 있으며,

유사 입법례인 「아동복지법」⁶⁾은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나 18세 이상이 되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경우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

6)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의 범위는 「아동복지법」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19세가 되기 전에 보호시설을 퇴소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음.

개정안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현행 법령에 피해자등에 대해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실익이 부족하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 신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수당 지급,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사후관리 체계 구축·운영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 행	정춘생의원안	장철민의원안
<신 설>	제17조의2(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	제17조의2(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

현 행	정춘생의원안	장철민의원안
	<u>방자치단체는 보호목적이 달성되거나 제16조에 따른 입소기간이 끝나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이하 “특별지원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u> <u>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u> <u>2. 자립에 필요한 자립수당 지급</u> <u>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u> <u>4.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u> <u>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일부를 제1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자립지원 공</u>	<u>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이하 “특별지원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퇴소한 사람은 제외한다.</u> <u>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 등의 지원</u> <u>2. 자립에 필요한 자립수당 지급</u> <u>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u> <u>4.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u> <u>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일부를 제1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자립지원 공</u>

현 행	정춘생의원안	장철민의원안
	<u>동생활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동생활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⁷⁾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시설로, 2024년 7월 기준으로 4개소가 있음.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2024. 7. 기준) >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 체	35	2	3	1	2	3	2	1	-	4	1	3	1	2	2	2	3	3
일 반 보호시설	17	2	1	1	1	1	-	1	-	3	1	1		2	1	-	-	2
장애인 보호시설	8	-	1	-	-	1	1	-	-	-	-	1	1	-	1	-	1	1
특별지원 보호시설	4	-	-	-	-	-	1	-	-	1	-	-	-	-	-	1	1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6 (3)	-	1 (1)	-	1	1 (1)	-	-	-	-	-	1 (1)	-	-	-	1	1	-

자료: 여성가족부

현행법⁸⁾상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미성년 피해자가 19세가 될 때까지이며, 2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19세에 도달하여 해당 보호시설을 퇴소할 경우 현행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퇴소자립지원금⁹⁾을 지원하고 있음.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4.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가해자 제외)을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지원¹⁰⁾을 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13조¹¹⁾에서는 보호시설의 업무에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아동복지법」¹²⁾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

9) 2024년 기준 1회 500만원 지급

1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5조제1항 관련)

2. 우선공급

나.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①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4. 제11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6.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는 퇴소 시 자립정착금(1,000만원 이상)과 자립수당(5년간,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여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기적 생활 상담, 사례관리 등 사후 관리를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보호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대상자와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퇴소 피해자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가 있음에도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이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에 비해 부족하고, 자립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¹³⁾.

제38조(자립지원)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 13) 「감취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입법조사처[2024. 7. 18. NARS 입법·정책(현장실태조사), 152호]

【 친족관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와 「아동복지법」 상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비교】

지원사항	친족관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	보호종료아동
법적 근거	성폭력방지법 제14조	아동복지법 제38조 등
경제적 지원	퇴소 시 자립지원금(500만원)	퇴소 시 자립정착금(1000만원 이상)
	-	자립수당(월 50만원, 5년간)
사후관리	보호시설 퇴소자 대상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 운영 (6개소, 입소기간 2년) * 퇴소 이후 사후관리 체계 없음	시·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19개소)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하여 정기적 생활 상담, 사 례관리 등 사후관리) * 기타 민간장학금, 취업지원 등 민관지원사업 다양

주: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퇴소자립지원금 인상(5백만원→10백만원), 자립수당 신설(5년간, 월 50만원) 반영
자료: 여성가족부

이에 개정안은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피해자의 자립지원의 내용을 퇴소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수당 지급, 사후관리 체계 구축·운영 등 「아동복지법」 상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의 내용과 동일·유사하게¹⁴⁾ 규정함으로써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원가정 복귀나 원가정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과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15)에

14)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에서 제3호(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만 제외하고 있음.
제1호의2의 자립정착금은 개정안 제14조제4호에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신설함에 따라 제외
한 것으로 보임.

서 정의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미성년 피해자에게도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¹⁶⁾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의 대상을 개정안 제14조제1항제4호의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정춘생의원안은 보호목적을 달성하거나(제17조제2항제1호), 현행법 제16조에 따른 입소기간 종료되어(제17조제2항제2호) 퇴소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장철민의원안은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거나(제17조제2항제3호)와 그 밖에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제17조제2항제4호) 퇴소한 경우만을 제외하고 있어 자립지원 대상에 제17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의사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는바, 자립지원 대상의 범위에 차이가 있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립지원 대상의 범위는 「아동복지법」의

15)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16) 「감취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입법조사처[2024. 7. 18. NARS 입법·정책(현장실태조사), 152호] 47p.

사례를 참고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19세가 되기 전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음.

참고로, 「아동복지법」상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2886)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임.

개정안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원가정의 지원이 부족한 미성년 피해자를 위해 자립수당 및 주거 지원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외부의 시선과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피해사실 노출을 꺼려하는 심리·정서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자립지원은 「아동복지법」상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대상으로 포섭하여 보편적인 청소년 복지체계 안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신중 검토 의견임.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친족 성폭력피해자는 일반 및 장애시설에도 60%이상 차지하고 있고,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퇴소자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임.

라.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의 가정복귀 절차 등 신설

개정안은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의 가정복귀 절차와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 재발 시 가정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정춘생의원안 제17조의3, 장철민 의원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현 행	정춘생의원안	장철민의원안
<신 설>	제17조의3(피해자의 가정 복귀) ① 특별지원 보호 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자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는 관할 시·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피해자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가정 복귀가 피해자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피해자를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가정으로 복귀하게 됨에 따라 성폭	제17조의3(피해자 가정 복귀 지원) ① 특별지원 보호 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자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피해자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장, 피해자를 상담·치료한 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의견을 모두 들은 후 가정 복귀가 피해자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피해자를 가정으로 복귀

현 행	정춘생의원안	장철민의원안
	력행위자(피해자에 대한 성폭력행위자를 말한다)와 동거하게 되는 경우 그 성폭력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u>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장</u> 2. <u>피해자를 상담·치료한 의사</u> 3. <u>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u>	시킬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가정으로 복귀하게 됨에 따라 성폭력행위자(피해자에 대한 성폭력행위자를 말한다)와 동거하게 되는 경우 그 성폭력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u>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라 가정으로 복귀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④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성폭력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u>	<u>제17조의4(가정 복귀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u>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u>제17조의3 제2항에 따라</u> 가정으로 복귀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의3제2항</u> 본문에도 불구하고 <u>제1항에 따른</u> 확인 결과 성폭력의 재발이 의

현 행	정춘생의원안	장철민의원안
	우에는 특별보호기관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피해자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⑤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장은 성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심되는 경우에는 특별보호기관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피해자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장은 성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현행법 제17조17)에 따라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는 본인의 의사 또는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퇴소할 수

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보호시설의 퇴소)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4. 그 밖에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있으며¹⁸⁾, 퇴소 이후에 별도의 사후관리 체계는 없는 상황임.

한편, 「아동복지법」¹⁹⁾은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 절차와 관련

18)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보호자 자격을 상실한 자의 경우 친부 또는 친·인척인 경우에도 퇴소 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19)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서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21. 12. 21.>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4(퇴소조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 또는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려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가정위탁보호자, 아동복지시설의 장, 전문치료기관의 장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통보(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등이 가정 복귀 신청을 한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 절차와 같이 특별지원 보호시설 피해자의 가정복귀 절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가해자의 대부분이 가정의 구성원인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정 복귀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점과 가정 복귀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원가정의 지원이 부족한 미성년 피해자를 위해 가정 복귀 및 재발 여부 확인 등의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원가정 복귀를 신중을 기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 체계로도 피해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시설 입소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시설 입소가 가능하다는 점과 시설 퇴소 또한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소를 명할 수 있기에, 개정안에 따른 원가정 복귀 검토 절차가 마련될 경우 의도와 달리 친족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보호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복리에 반하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며, 반하는 경우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정 필요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피해자가 복귀한 곳의 환경을 직접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안전한 공간인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보호시설 장은 법정 보호자가 아닌 시설의 장에 지나지 않으며, 치료 의사가 퇴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법정 보호자가 있는 한 관련 절차는 권한 밖으로 「아동복지법」 상에 성학대가 포함되면서 아동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서 결정하고 있어, 개정안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 김한규)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